

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

- 국민체감도 및 외부 평가를 거쳐, 6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담당자들에 시상

1 '23 하반기 적극행정 시상식

김주현 금융위원장은 '23.12.21일(목)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「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」을 시상하였다.

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·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, '적극행정 모니터링단*' 및 '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' 평가**를 거쳐

*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인 금융위 서포터즈 12명 위촉

** 민간위원 5인

12.1(금) 「제3차 적극행정위원회*」(위원장 :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)의 결을 통해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하였다.

* 참석위원 : (정부)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, (민간) 김학균(법무법인 태평양), 이한진(김앤장법률사무소), 서병호(한국금융연구원), 김민정(충남대학교), 김태현(BCG)

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하였으며,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.

2 수상 사례 주요 내용

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먼저 우수사례로 금융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「소액생계비 대출」을 지원하고 채무 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,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'깜깜이 투자'하는 일이 없도록

「가상자산 회계·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한 사례,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, 은행으로부터 예금·적금 수취, 대출, 환전 및 송금 등 은행의 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영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「은행대리업」 제도 도입 추진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장려 사례로는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사례, 조직화·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·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」을 마련한 사례,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,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‘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’을 마련한 사례를 선정하였다.

3 금융위원장 격려 말씀

김주현 금융위원장은 “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금융소비자들을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정책들이라고 본다.” 고 격려하면서

“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”고 하였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홍수정 (02-2100-2801)
		담당자	사무관	박예슬 (02-2100-2804)



사례	주요 내용
<p>「소액생계비 대출」 사업 (서지은 사무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제도권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취약 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조정·복지·취업연계 등 상황에 맞는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지원 ○ (성과) 그간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연체자, 무소득자를 포함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, 고금리 불법사금융 이용 위험에 노출된 금융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여 공공부문으로 흡수, 총 10.5만명에게 635억원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채무조정, 복지제도 안내 등 복합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유도하는 등 복합상담 11.7만건 지원 ○ (적극행정) '민생금융대책 당·정 협의회'에서 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지원 방안 보고 및 논의('22.11월) ⇒ 대통령 주재 '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'에서 세부 지원내용(지원대상, 대출한도, 금리 등) 발표('23.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소득자 대상 전국 3,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, 11개 지자체와 협업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자체에 공문 발송,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조 요청 등 - 대출신청 시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상담을 실시하고,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상담을 연계하고 복지·취업지원 등 복합지원 - 금융회사, 캠프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'23~25년간 기부금 2,000억원 (캠프 500억+은행권 1,500억)을 조성하고,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보유한 금융회사 기부금 444억원 마련
<p>가상자산 깜깜이 투자 예방을 위한 회계·공시 투명성 강화 (김세화 사무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가상자산 깜깜이 투자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「가상자산 회계투명성 강화 3종 패키지*」 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투자자) 가상자산 주식 공시 바로읽기(모범사례) (발행·투자회사)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및 공표 (회계법인) 가상자산 외부감사기법 가이드라인 제정 및 안내 ○ (성과) 투자자 등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들어 등 양측의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 ○ (적극행정) IFRS 제정속도가 가상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적 규율체계가 최근 마련된 만큼 가상자산의 회계규율 체계를 마련하여 시장의 회계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」 본회의 통과(6.30.)

사례	주요 내용
<p>「은행대리업」 제도 도입 추진 (서준 팀장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은행 아닌 자가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, 은행으로부터 예금·적금 수취, 대출, 환전 및 송금 등 은행의 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영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추진 ○ (기대효과) 은행 대리업이 도입되면, 노령층 등 금융 소비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,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, 우체국 등 가까운 은행대리업자의 점포에서 쉽고 편리하게 은행 업무 처리 가능 ○ (적극행정) 인터넷뱅킹·모바일뱅킹이 확산되면서, 은행 영업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, 인터넷뱅킹·모바일뱅킹이 어려운 노령층 등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은행 업무에 대한 대리업 도입을 적극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·법률 전문가, 은행권,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 운영
<p>통장협박 관련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안내 (남명호 사무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통장협박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 법 개정을 통해 해당 피해자 이의제기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 개정 前이라도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○ (성과) 법 개정 前이라도 통장협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하여 합의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대응 매뉴얼 배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합의중재)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,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* 중재 요청을 통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토록 조치 *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자금을 반환하면 피해자는 지급정지 취소에 동의한다는 내용 ○ (적극행정) 국조실 주관 「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」(‘23.5.25)를 통해 同 제도운영 논의, 중기부 도움을 얻어 통장협박의 주피해자인 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에게 적극 안내(‘23.7월 통장협박 대응 매뉴얼 배포)
<p>장 려</p> <p>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」 마련 (장원석 사무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조직화·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·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획기적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(협업체계)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대폭 확대, ②(프로세스) 신고·포상 활성화, 조기적발 체계 강화, ③(인프라) 금감원·거래소 조직 개편,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조사수사 ④(제도개선) 과징금 제재 시행 준비 조사 보안 강화 등 ○ (성과) 불공정거래 혐의의 선제적 적발, 효율적 조사, 엄정 제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,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적발) 시장 감시·조기적발 체계 등 강화 → 신종 불법행위 혐의 인지 및 예방 - (조사) 상시적·체계적 협업 및 조사·수사역량 강화 → 조사 효율성 제고 - (제재)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→ 범죄 유인 저하 ○ (적극행정) 검찰, 금감원,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3개월간 격주로 ‘비상 조사·심리기관협의회’를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검토하고, 시장 감시·조사·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」을 마련·발표

사례	주요 내용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 (김민수 사무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, 명확한 사유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'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' 마련 ○ (성과) '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' 마련하여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10px auto; width: 8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매뉴얼 마련 전</th> <th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⇒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매뉴얼 마련 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· 은행 방문시마다 관련 서류 제출</td> <td></td> <td>· 필요시에만 서류 제출</td> </tr> <tr> <td>· 은행마다 제출서류 상이</td> <td></td> <td>· 은행별 제출서류 통일 (금융거래별 필수 확인서류 안내)</td> </tr> <tr> <td>· 업무 지연 및 거절</td> <td></td> <td>· 업무 처리속도 정상화 (주요 업무처리방식 안내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○ (적극행정)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체계가 부족하고 관계 기관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 중심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'조정자' 역할 수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3.1월부터 '23.5월까지 실무작업반* 총괄 운영하여, 성년후견인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파악, 문제점 개선을 위한 매뉴얼 마련(66쪽 분량) * 참여기관 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서울가정법원, 은행연합회, 민간전문기관 (후견지원 업무수행 사단법인) 	매뉴얼 마련 전	⇒	매뉴얼 마련 후	· 은행 방문시마다 관련 서류 제출		· 필요시에만 서류 제출	· 은행마다 제출서류 상이		· 은행별 제출서류 통일 (금융거래별 필수 확인서류 안내)	· 업무 지연 및 거절		· 업무 처리속도 정상화 (주요 업무처리방식 안내)
매뉴얼 마련 전	⇒	매뉴얼 마련 후											
· 은행 방문시마다 관련 서류 제출		· 필요시에만 서류 제출											
· 은행마다 제출서류 상이		· 은행별 제출서류 통일 (금융거래별 필수 확인서류 안내)											
· 업무 지연 및 거절		· 업무 처리속도 정상화 (주요 업무처리방식 안내)											